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와 방위세 납부기간에 차질없도록

— 축산업자의 방위세 신고 및 납부



〈이 현 남 부장〉

- ... 요즈음 축산업자의 가장 큰 관심...○
- ...사는 소득세 감면신청, 방위세 신...○
- ...고 및 납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개정 등 세무에 관한 문제일 것이...○
- ...다. 지난 1월호에서도 소개한 바...○
- ...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
- ...서 방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이 현 남

(퓨리나 코리아(주)
경리부장)

1. 축산업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근거

소득세법 제 1 조에 의거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 3 조 및 제 4 조에 의거 : 과세소득의 범위 및 구분을 살펴보면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살림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축산업자와 관련있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중

1. 축산업 임업 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 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한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소득중 법 제 6 조에 의하여 : 소득의 성질 정부시책의 일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금액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축산업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는,

1. 당해사업을 개시한 때와 그 다음 년도부터 6년간은 그 산출 세액의 100분의 100

2. 제 1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은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고시와 함께 정부에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는 이후 설명하고자 하는 방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추후설명 할것임. 일전에 어떤 양측가 한분이 저에게 계관관매

도, 소매상이나 부로일러판매도, 소매상도 축산업에 속하는지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신일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 축산업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 말 돼지 양 사슴 토끼 친칠라 밍크 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 증식 채란 채모 착유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기 설명으로써 축산업 역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하나이며 일정한 기간만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현재의 세법에 의하여서는 1975년 12월 31일로서 100% 전액 감면 기간은 끝이 나서 이후 3년간은 50%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속하게 됨을 점언한다. 항간에 전해지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전액감면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소문은 정부의 세제 방침 정책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만큼 그 누구도 확실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단계이며 관련된 소득세법해설 축산회계방법 등에 관하여는 추후 기회 있는대로 설명할 것을 약속하며 본문에서는 제목과 관련된 방위세에 관하여서만 언급을 계속하고자 한다.

작년 6월 25일 정부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결의의 일환으로 방위세법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7월 이 세법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 시행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세한 방위세법의 소개는 작년 월간양계 9월호에 게재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가 반복 게재됨은 불가피한 일이다. 축산업자의 방위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기본방향 제3호 및 동법 제2조 2항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방위세의 과세표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에 준한다. 다시 말하면 법 자체는 본법 15조 및 부칙 15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단일 세목으로서는 전체 국세징수목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징수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축산업이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세 납세업종이라는 것을 앞서 말했듯이 축산업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역시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감면받을 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만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액의 산출이 가능하다.

축산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크게 나누어,

1. 법인축산 또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3. 간이기장 및 일기장기장의무자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등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첫째 : 법인축산 또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과세표준 산출방법은 이곳에서 설명을 약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법인체나 대규모의 기업축산은 반드시 정규회계원칙에 의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이며 기록 및 장부가 있는 한 과세표준이 되는 이익금의 산출에는 문제가 없겠다.

둘째 : 복식부기 의무자라 함은 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도에 수입금액(주로 판매 금액을 뜻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복식기장 의무자로 지정받은 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할 의무를 갖으며 이런 복식기장장부를 비치 기록한 자는 역시 과세표준의 산출은 장부에 의해서 쉽게 산출될 것이다.

셋째 : 간이기장 및 일기장 의무자가 주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초점이며 우리나라 축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다. 간이기장의무자라 함은 직전년도의 판매액이 6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그 외의 모든 자는 일기장 의무자로 총칭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간이장부는 현금 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및 경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일기장이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 현금 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세무당국이 이를 조사 인정될 때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간이기장의무자나 일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는 장부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산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장부도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도 없는 자들로부터 적정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 국세청당국이 고안해 낸 것이 소득표준율이라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당해 납부의무자의 판매 금액만 포착이 된다면 이 금액에 일정율의 소득 표준율을 곱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흔히들 인정과세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전년도 현재의 국세청에서 적용한 축산업자에 대한 소득 표준율을 소개하면,

| | |
|---------|------------|
| 양계업 12% | 양우업 15% |
| 양돈업 17% | 양봉업 18% |
| 양양업 14% | 등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소득 표준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국세청 당국이 매년 당해년도의 업종별 경기징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

갑이라는 양축가의 연간 판매액이 10,000천원이라 했을 때 소득표준율 12%를 곱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세율이 18%라면 세액은 151,200원이 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판매금액의 신고 및 결정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예상되는 몇 가지 세무당국의 판매액 조사 내지는 결정 방법을 소개하면 :

1. 사료 구입 자료에 의한 추정
2. 시설 규모에 의한 추정
3. 감면 신청서에 의한 결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 사료 구입자료에 의한 추정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여러분이 배합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구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업자납세번호서를 요구할 것이며 표준계산서라는 것을 발부하여 줄 것이다. 사료회사는 4매의 표준계산서를 작성하여 한매는 거래가 있는 다음달 말까지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세무자료는 여러분의 관할세무서로 전달되어 과세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이같이 보고된 세무자료 금액 또는 일정액의 가감된 금액이 여러분의 과세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축산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계업자의 경우 사료구입 자료를 전액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육추기간 중에 있는 병아리의 사료구입부분은 실제 산란중에 있는 산란사료의 부분과는 달리 양축가의 직접적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국세청당국이 축산회계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던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또 한편 사료구입 액수는 전체 제란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긴 하지만 이외에 여러 가지의 경비 및 일정액의 이익이 가산되어 판매액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이 점에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 시설 규모에 의한 추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즉 축산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축산업자중 많은 사람들이 일년내내의 가축마리수나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판매액을 결정지을 때 유사규모의 몇개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동종류 동규모의 모든 업소에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 감면신청서에 의한 결정을 생각할 수 있다. 금년 2월말 여러분은 빠짐없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 신청서에는 연간 소득 금액 내지는 감면 받고자 하는 소득세액이 기록될 것이다.

이 감면신청서는 여러분 자신대로의 계산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인 만큼 감면신청서상의 감면받고자 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액을 납부하므로써 끝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다. 그러나 감면신청서의 작성시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앞서 설명드린 첫째, 둘째의 경우를 고려하여서 타당성이 있는 범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세무공무원의 생각에 너무적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단 세무조사를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 못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예는 생략함)

※ 끝으로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이 최소한 판매에 관한 계속 기록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기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3. 방위세 세율, 세액계산 신고 및 납부

○ **축산업자의 방위세율**은 : 사업소득에 대한 방위세율과 같이 연간 과세표준액이 840만 이하일 경우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10%, 연간 과세표준액이 84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20%로 되어 있다.

○ **세액 계산**은 :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대신한다.

산란계 6000수를 가진자의 연간 계란생산 개수를 1,320,000개로 보고 년중 평균 난가를 20원으로 계산하여 보자. 총 판매금액은 26,400,000이 될 것이다.

세액을 계산하면,

$$26,400,000 \times 12\% (\text{소득표준율})$$

$$= 3,168,000 (\text{소득세 과세표준})$$

$$3,168,000 \times 40\% = 1,267,200$$

$$= 746,400 (\text{소득세액})$$

방위세는 $746,400 \times 10\% = 74,640$ 원이 된다.

참고로 소득세율을 소개하면 :

| 년기준 과세표준액 | 세율 | 공제금액 |
|------------|-----|--------|
| 1— 24만원 | 8% | |
| 24만원— 48만원 | 10% | 4,800원 |
| 48만원— 72만원 | 12% | 14,400 |

| | | |
|------------------|-----|-------------|
| 72만원— 96만원 | 15% | 36,000 |
| 96만원— 120만원 | 18% | 64,800 |
| 120만원— 150만원 | 21% | 100,800 |
| 150만원— 180만원 | 25% | 160,800 |
| 180만원— 240만원 | 30% | 250,800 |
| 240만원— 300만원 | 35% | 370,800 |
| 300만원— 480만원 | 60% | 520,800 |
| 480만원— 1,200만원 | 50% | 1,120,800 |
| 1,200만원— 2,400만원 | 55% | 1,720,800 |
| 2,400만원— 3,600만원 | 60% | 2,920,800 |
| 3,600만원— 4,800만원 | 65% | 4,720,800 |
| 4,800만원 이상 | 70% | 7,120,800이다 |

○ **신고 및 납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방위세의 적용시기는 방위세 자체가 7월에 공포 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축산업자 역시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및 소득세액의 산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계된 금액에 의하여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산출된 세액을 앞에서 말한,

·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방위세액 등을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가 여러분은 닦아오는 1976년 2월 29일까지 197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위세를 관할세무서 개인세계나 종합소득세계에 제출하시고 납부하시면 자진신고의무는 다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축산업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방위세액계산 등의 문제가 있겠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설명을 약하기로 한다. 다만 원리는 모든 소득의 합계액에 의한 소득세산출이 방위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점은 분명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1975년 8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 부분만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끝으로 여러분의 방위세 자진 신고에 있어서 더욱더 알고싶은 세부사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후일의 인정과세 등의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